

경운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교육적 수요충족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산학간의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경운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항에 의하여 위촉한다.

- ① 위원 및 위원장은 교직원, 대구·경북 관련기관의 부서장, 산업체 대표 및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각 학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회 산하에 각 학부(과)별 또는 개별사업팀에 대응되는 산학협력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산학협력 소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소위원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학(부)과장이 되며, 간사는 소속교수 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1. 산학공동기술 교육과정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학공동 인력양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산학관련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현장실습 및 진로에 관한 사항
5. 대학과 산업체간의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6. 교수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견학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임직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산학기술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기술개발과제의 진행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0.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산업기술의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12. 산학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13. 벤처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수당)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